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4.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4. 29

다. 상 정 일 자 : 2003. 4. 29

(제1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허 길 중

나. 제안사유

-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화순군세조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우리군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화순읍지역의 도시계획지역중 용도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만 부과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녹지지역에 호화주택 및 여관, 식당 등의 대형 건축물이 신축되어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세점이 대두되고, 2002년 부터 면지역의 도시계획지역에도 도시계획관련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으므로 면지역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가 필요하여,
- 화순읍 지역은 자연녹지를 포함한 전지역을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 면지역의 도시계획지역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부과지역으로 고시코자 함.
-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내역

【현 행】

부 과 지 역	부 과 제 외 지 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중 화순읍 20개리(교리,향청리,만연리,신기리,훈리,동구리,유천리,일심리,다지리,평덕리,삼천리,이십곡리,대리,강정리,벽라리,감도리,계소리,연양리,내평리,서대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의 주거, 상업,공업지역중 춘양면,청풍면,이양면,능주면,도곡면,동북면,남면,동면의 전지역

【변 경】

부 과 지 역	부 과 제 외 지 역
화순읍 교리, 향청리, 만연리, 신기리, 훈리, 동구리, 유천리, 일십리, 다지리, 광덕리, 삼천리, 대리, 강정리, 벽라리, 감도리, 계소리, 도동리, 연양리, 내평리, 서대리 (화순읍지역 20개리)	화순읍 이십복리, 세량리, 영남리, 수만리 (화순읍지역 4개리)
춘양면 식정리, 화림리 (춘양면지역 2개리)	춘양면 회송리, 가봉리 (춘양면지역 2개리)
이양면 품평리, 오류리, 이양리 (이양면지역 3개리)	청풍면 한지리, 어리, 세정리, 신리 (청풍면지역 4개리)
능주면 남정리, 정남리, 식고리, 잠정리, 관영리 (능주면지역 5개리)	능주면 내리, 광사리, 백암리 (능주면지역 3개리)
동북면 독상리, 천정리, 천변리 (동북면지역 3개리)	동북면 구암리, 한천리 (동북면지역 2개리)
남면 사평리 (남면지역 1개리)	남면 검산리, 원리, 벽송리 (남면지역 3개리)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헌범)

- 본 의결안은 지방세법 제238조 및 화순군세조례 제83조에 의거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본 의결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 본 안은 현행 화순읍 20개 '리'에만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를 면지역 도시계획지역중 변소재지 중심 '리'까지 확대 부과하고자 하는 의결안입니다. 부과지역을 면지역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등 도시계획 관련 사업이 기 추진되었고 아울러 2003년도에도 추가로 도시계획사업이 이들 지역에 예정되어 있어 이들 지역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조치라고 검토됩니다.
 - 그러나 새로이 부과되는 '리'의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의 실정과 혜택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지역 실정에 누구보다도 밝으신 의원님의 민밀하신 검토가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 기타 본 의결안의 법규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첨 부 :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